

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

| |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 번호 | 427 |
|----------|-----|

발의년월일 : 1995. 9. 25
발 의 자 : 홍연표 의원
의 8 인

1. 제 안 이 유

- 대통령령 제14703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령이 '95년7월1일 공포 시행되고 경기도 조례 제2571호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가 공포됨에따라 안산시의회 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2. 주 요 골 자

○ 지금까지는

- 특정한 안건심사시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특별위원회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때까지 존속되었던 것을

○ 앞으로는

- 수개의 상임위원회에 관련된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등 필요 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(안 제7조 1항)
- 특별위원회 설치시 그 활동기간을 명시하였으며(안 제7조 4항)
- 활동기간 종료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토록 하였음(안 제7조 5항)

3. 참 고 사 항

- 대통령령 제14703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령
- 경기도조례 제2571호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
관한조례

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

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중제1항과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5항을 신설한다.

- ① 의회는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-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.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- ⑤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 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. 구 조 문 대 비 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|
| <p>제7조(특별위원회) ①의회는 특정한 안건 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본회 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</p> <p>②~③ (생략)</p> <p>④특별위원회는 그위원회에서 심사한 안 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 다.</p> <p>(신설)</p> | <p>제7조(특별위원회) ① -----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----- 설치 할수 -----</p> <p>②~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할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. 다만, 본회의의 의결로 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</p> <p>⑤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전 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 하여야 한다.</p> |
| | |
| | |